

성동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5급 상당)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5급 상당)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9. 11.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근무지	임용직급	임용인원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1명	의회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 보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만 18세이상 대한민국 국민(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을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자격요건(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 관련분야: 행정학과, 법학과 등 일반행정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출연·출자기관 포함), 공공단체,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지방의회, 지방행정, 지방자치분야 등 근무경력

4 보수 및 수당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9.11.4. ~11.14.	2019.11.15. ~ 11.19.	서류전형	2019.11.20.	-	2019.11.21.
		면접시험	2019.11.25.	구의회(2층) 제2회의실	2019.11.26.

나.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심사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19. 11. 15.(금) ~11. 19.(화), 09:00~18:00
 - ※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 접수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사무국 의정팀(성동구의회 1층)
- 접수방법: 방문제출(우편 및 인터넷, 단체접수는 받지 않음)
- 원서교부: 성동구의회 및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 <첨부 1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cm) 1매 별도제출
- 응시수수료: 10,000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 이력서 1부 <첨부 2호>

-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 4호>

○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제출
- 학과(학위)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 증명서 제출 <첨부 6호>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단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 5호>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해 제출)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 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관련학과 증명서 1부 <첨부 6호>

- 상기 관련분야와 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

다. 유의사항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생서류는 가능),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 바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합격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합격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 재 공고시,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
하므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 결격사유의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의회사무국 의정팀(☎02-2286-6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